

의안번호	2218408
의 퇴 인	여기구 의원
회 답 일	2026. 8. 6.
추 계 번호	26B2073

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7억 2,500만원(연평균 3억 4,5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(안 제5조)	100	-	-	-	-	100	20
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(안 제6조)	325	325	325	325	325	1,625	325
합계	425	325	325	325	325	1,725	345

주: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연구용역 및 통계조사의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·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5조(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·협의를 하여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차별 시행 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(제3항)	의무규정
3	안 제6조(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 조사)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제1항) 1. 연간 농산부산물의 발생량 2. 연간 농산부산물의 처리실적 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4	안 제8조(농산부산물 분리 배출 시설 지원)	시·도지사는 농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농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 및 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(제1항) 제1항에 따른 농산부산물 분리배출의 지원대상,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2항)	재량규정 의무규정
5	안 제16조(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·운영)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(이하 “자원화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(제1항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시·도지사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(제4항)	재량규정 재량규정
6	안 제18조(재활용제품 판로확대)	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농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, 비료, 사료, 연료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(제1항)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7항)	재량규정 의무규정
7	안 제1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(제3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-	• 미대상: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·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,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2	안 제5조(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	-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-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(제3항)
3	안 제6조(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)	○	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
4	안 제8조(농산부산물 분리 배출 시설 지원)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은 시·도지사가 농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농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 및 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제정안은 지원대상,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5	안 제16조(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·운영)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원화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시·도지사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·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6	안 제18조(재활용제품 판로확대)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·도지사가 자원화시설과 농산부산물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, 비료, 사료, 연료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제정안은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7	안 제1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현 시점에서는 업무 위탁 대상 기관, 업무 위탁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5조)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억원(연평균 2,000만원)으로 추계
 - 추계기간 중 첫째에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내용	연도	금액
제3차 쌀가공 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본계획('24~'28) 수립 기초 연구	2023	100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[표 3]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·시행	100	-	-	-	-	100	20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·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(안 제6조)

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연간 농산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 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○ 시·군·구별 통계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사물량, 조사별 단가 등 구체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예측이 어려우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 실태조사를 참고하면, 매년 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6억 2,500만원(연평균 3억 2,500만원)으로 추계

－ 매년 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실태조사 관련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실태조사	2026년 예산
쌀가공산업 실태조사	200
귀농귀촌 실태조사	450
평 균	325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[표 5] 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	325	325	325	325	325	1,625	325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매년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실제 통계조사 실시 주기·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